

「2014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현지 진출 프로그램 미국 [예비]창업자 추가 모집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지보육(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2014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현지진출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글로벌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팀)을 발굴하여 국내외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창업·진출 촉진

□ 지원규모

- 2개의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3개 내외의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 국가별 신청분야 및 지원규모 >

국가	신청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
미국	SNS, 앱 등 IT분야	Plug & Play	1개팀	약 12주
		Draper University	2개팀	
		총계	3개팀	

□ 지원내용

- (현지보육) 사무공간 제공, 분야별 현지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 현지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참가팀의 창업단계 및 수요 등을 고려,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현지보육 프로그램(안) >

구분	세부내용
전문가특강	▪ 현지 시장분석, 성공전략 등
사무공간 제공	▪ 현지창업 준비에 필요한 공간
멘토링	▪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시
네트워킹 등	▪ 현지 엔젤 투자자 등과 네트워킹, 데모데이 제공
현지 체재비 지원	▪ 창업팀 항공료 100%, 숙박비 50% 지급

* 숙박비는 1인 3개월 기준 230만원 이내 추정(변동 가능)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①예비창업자 또는 ②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신청 가능하며, ③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2인 이내 팀으로 신청가능하며, 팀원 중 1인은 반드시 영어 능통자여야 함.

①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및 법인기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② 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2009년 1월 1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③ 지원제외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제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개인, 기업은 신청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 ☞ 중소기업청 및 타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진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개인, 기업
 - * 단, 공고일 현재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기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사업 참가자는 협약이 종료되었어도 지원 제외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업
 - *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붙임 11 참조)

3.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4년 7월 11일(금) ~ 7월 31일(목), 15: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을 통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발표평가 자료(영어로 작성) 제출

□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신규)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온라인 신청절차

① 1단계 : 회원가입

-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 에 회원가입(신규)

② 2단계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창업넷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한글파일) 및 발표자료(PPT) 다운로드 후 작성

③ 3단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창업넷 창업지원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작성파일 업로드

* 창업넷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창업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새롭게 열리는 창의 우측상단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작성파일 : (기본)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추가)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접수 완료 확인

4. 평가절차 및 선정

- (평가방법) 아이템의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며, 발표평가로 진행

- 사업계획서(한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자료(영어)를 작성하여, 영어로 발표

< 평가 세부 항목 >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성	경쟁사의 모방가능성, 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대처방안, 기술적 차별성,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
사업성	국내외 시장 규모, 현지 시장 진입 및 성장 가능성, 매출 가능성 등

□ (평가절차) 선정평가 + 운영기관 면접평가

-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순으로 운영기관 면접평가 실시
- * 발표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현지 운영기관 면접은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예정)

□ (최종선정) 창업팀은 운영기관 면접을 통해 '적격', '부적격'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적격' 창업팀이 최종 선정되어 현지진출

5. 추진일정



* Plug & Play, Draper University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현지진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해외 현지 진출전 선정이 취소되며, 현지진출 후 발견 시 선정취소와 더불어 기 지원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국내연수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 현지 진출 후 1개월 경과시점에서 현지시장 적합성 및 현지창업 활동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시 지원 사업을 조기 종료함



- 해외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외진출 참가자에게 있음
 - 해외 현지법규를 준수할 것
 -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 질병 등에 대비 현지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주의를 다할 것
 - 해외 보육장소가 속한 도시를 벗어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할 것
- 모든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었으나, 프로그램 外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제공할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042-480-4333
-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42-480-4373

【붙임 1】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사업_해외현지 진출프로그램」
지원 제외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 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